

제 호		
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		
상 호		
영업장소		
대표자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
준수사항 및 신고의무 사항	○ 준수사항: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○ 신고의무: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제2항·제4항,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, 제56조	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매매업자로 허가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 작 인		
※ 이 허가증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		